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제90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2. 24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2. 24
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2005. 3. 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정이유

○ 주차장법령에 의한 관련 과태료, 과징금 및 각종 징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서 주차장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
나.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세입금의 부과징수(안 제6조)

마.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(안 제7조)

바.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보조금의 반환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음.

○ 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보조금은 주차장설치공사 금액의 80%이내 1가구당 최고 20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조례안 제9조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용도를 변경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,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였음.

○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 위임되어 있고 고성군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심사 후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제8조 보조금에서 공사금액의 80% 한가구당 200만원이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정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구축물을 해야 지원하는지 또는 지붕이 없어도 포장 등의 사업을 하고 차선만 그려도 지원하는지?

● 답 : 건축물을 신·개축하거나 시설 후 지붕이 없는 상태의 주차장 시설에도 보조 가능합니다.

○ 문 : 제6조 세입은 수입금, 납부금, 과징금, 과태료, 이행강제금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가?

● 답 : 납부 세입 중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을 증·개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납부하는 수입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금후 주차장 설치 운영에 제일 큰 재원이 될 것입니다.

6. 토　　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5. 3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